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29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안철수 · 김성원 · 강승규
이종배 · 김 건 · 박정하
백종헌 · 김예지 · 서명옥
김장겸 · 김선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근로자의 180일 기준보다 길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의 경우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종전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69조의3제1호 및 별표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제1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69조의6 관련)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69조의6 관련)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 ----- -.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 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 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u>1년</u> 이상일 것	1. ----- ----- ----- ----- <u>6개월</u>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